

2023. 4. 5.(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11.(토) 9시 ~ 3. 15.(수) 18시
- 신청자격 :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재·보궐선거 실시지역 : 별첨]
  -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3. 3. 28.(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별첨**

**2023. 4. 5.(수)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현황**

구분	시·도	관할 위원회	선거구명	선거구역	비고
국회의원 (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을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기초 단체장 (1)	경남	창녕군	창녕군	창녕군 일원	
광역 의원 (2)	경북	구미시	구미시제4	상모사곡동, 임오동	
	경남	창녕군	창녕군제1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기초 의원 (4)	울산	남구	남구나	신정4동, 옥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나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전북	군산시	군산시나	해신동, 삼학동, 신평동, 소룡동, 미성동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시나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교육감 (1)	울산	울산	울산	울산광역시 일원	